

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62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4. 2.

제 출 자 : 제18회 파주시의회
산업건설위원회

☐ 수정이유

-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보상심의시 행정편의적인 위원회 운영과 보상가 산정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자 함.

☐ 수정 주요골자

-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심의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2인을 추가로 위촉토록 함. (안 제3조제3항)

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중 “관계공무원중에서”를 “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
2인을”으로 하고 “임명”을 “임명 또는 위촉”으로 한다.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3조(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, 위원은 <u>관계공무원중에서</u> 시장이 <u>임명</u> 하되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	제3조(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 <u>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2인을</u> -- <u>임명 또는 위촉</u> ----- -----